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
번호

제안년월일 : 2008. 10. 27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규정시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4조제1항중 “아니하는” 을 “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” 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중 “아니하는” 을 “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
지 아니하는” 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<u>아니하는</u>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</u> <u>초과하지 아니하는</u> -----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